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급수준을 상향하며, 고용보험 신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대체인력지원금 추가지원(안 제29조제4항)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또는 사용 시 최대 1개월간 대체인력지원금 추가지원 하고자 함

나. 대체인력지원금 사후지급금 폐지(안 제29조제6항)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

다.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제68조제1항, 안 제104조의8제4항, 안 제10

4조의15제4항)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어 2026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3,500원으로 상향하고, 이에 맞춰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상한액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조정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안 제104조의2제2항)

근로자가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함.

마. 권한의 위임 등(안 제145조제4항)

고용보험 신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2개월간”을 “2개월간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한다.

제68조제1항 중 “11만원을 초과하는”을 “113,500원을 초과하는”으로, “11만원을 해당”을 “113,500원을 해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2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frac{10 \times (\text{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제104조의8제4항 중 “6만6천원”을 “68,100원”으로 한다.

제104조의15제4항 중 “6만6천원”을 “68,100원”으로 한다.

제145조제4항 중 “지원, 제38조제2항”을 “지원, 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제38조제2항”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및 권한 위탁에 따른 업무의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2. 근로복지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발전

재단(이하 “노사발전재단”이라 한다)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복직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남아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 ③ (생 락)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u>2개월간</u> 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고용·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	④ ----- ----- ----- ----- ----- ----- ----- ----- ----- ----- ----- <u>2개월간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간</u> ----- ----- ----- ----- ----- ----- ----- ----- -----

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생략)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한다.

가. 업무 인수인계기간: 제4항
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
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
의 기간: 제4항에 따른 대
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
0

3. (생략)

⑦ (생략)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
액으로 한다.

② (생략)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생략)
②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
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
액) ① -----

----- 113,500원을 초과하
는 ----- 113,500원을 해당 -
-----.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10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6천원을 말한다.

⑤ ~ ⑧ (생략)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8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6천원을 말한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u>250만원</u> 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10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u>160만원</u> 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68,100원-----.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68,100원-----.

⑤ ~ ⑧ (생략)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고용창
출사업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
선 지원,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5
호의 고용촉진 시설로 한정하
다)에 대한 비용 지원, 제52조제
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
발사업의 지원과 제5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
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원, 제37조의2에 따른 고
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
원, 제38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및
권한 위탁에 따른 업무의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2. 근로복지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발전재단(이하 “노사발전재단”이라 한다)

<u><신 설></u> ⑤ ~ ⑨ (생 략)	<u>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u> <u>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u> <u>관이나 비영리법인</u> ⑤ ~ ⑨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